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86

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진선미・박지원・이학영

김태년 · 용혜인 · 임오경

황명선 • 윤종군 • 한정애

김한규 · 김성회 · 김문수

서영교 · 백승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음.

한편, 협동조합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대 규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회의 개최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,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 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 모하며,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, 제32조, 제52조, 제53조, 제58조, 제71조 및 제103조).

법률 제 호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후단 중 "사항"을 "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으로 한다.

제3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 및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 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52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8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71조제1항 후단 중 "사항"을 "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으로 한다.

제103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설립신고 등) ① 협동조합	제15조(설립신고 등) ①
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	
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	
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	
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	
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	
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	
여야 한다. 신고한 <u>사항</u> 을 변경	<u>사항 중 기획</u>
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2조(이사회) ① ~ ④ (생	제32조(이사회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 및
	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
	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
	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
	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
	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
	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
	<u>것으로 본다.</u>
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52조(결산보고서의 승인) ① 협	제52조(결산보고서의 승인) ①

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(사업보고서, <u>대</u>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)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53조(출자감소의 의결) ① 협동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<u>대차대조표</u>를 작성 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 략) 제58조(청산인) ① (생 략)

-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<u>대차대조표</u>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④ (생 략)
- 제71조(설립신고 등) ① 협동조합 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 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

	<u>무상태표</u>	
제		
제	<u>재무상태표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58조(청산인) ① (현행과 음)	
제	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71조(설립신고 등) ①	

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② ~ ⑤ (생 략) 제103조(청산인) ① (생 략)
 -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(3)	\sim	(5)	(생	략)

	사항 중
	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	<u>.</u>
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	103조(청산인) ① (현행과 같
	으)
	②
	<u> </u>
	③ ~ ⑤ (현행과 같음)